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544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5446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3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23. 3. 14.

판결선고 2023. 4.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3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재광, 판사 김초하, 판사 전민정